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제목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판결이유	<p>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p> <p>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및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 등 참조).</p>	

(1) 본 판례의 의의 및 취지

- 골프코스 설계도면과 같은 기능적·실용적 요소가 강한 설계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성 판단에서 일률적으로 저작물 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
-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고, 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에 나타난 창조적 개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
- 기존 판례의 입장(기능적 저작물이라도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이 있으면 창작성 인정 가능**)을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적용한 사례
- 원심이 **기능적 제약을 이유로 창작성 판단을 생략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

(2) 사안개요

- **원고**
 - 미국 법인
 - 골프장 코스 설계업 수행
- **원고의 행위**
 - 이 사건 각 골프장의 소유주와 **골프장 설계계약 체결**
 - **골프코스 설계 완료**
- **피고의 행위**
 - 여러 골프장의 모습을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 골프장 소유주들과 **이용협약 체결**
 - 시스템에 **이 사건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 포함**
- **원고의 주장**
 -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음**
 -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제작한 행위는 **저작권재산권(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전송권) 침해**
- **청구 내용**
 - 손해배상

- 침해행위 정지
- 침해물 폐기

(3) 법리

㉠ 저작물의 창작성 기준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대법원 판례 법리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능적 저작물에 대한 판례 기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은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 일반적 표현방법
- 용도나 기능 자체
-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기능적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골프코스 설계의 창작성 판단 기준

골프코스 설계의 특성

- 골프 규칙
- 코스 규격
- 지형
- 이용 편의성
- 안전성

등에 의해 표현의 제약 존재

그러나

“골프코스 설계자는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함으로써 다른 골프코스과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실용적·기능적 요소에 따른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 창작성 판단 대상

설계도면에는

- 시설물 배치
- 개별 홀의 형태
- 구성요소 위치
- 모양
- 개수

등이 나타남

이러한 요소는

“선택·배치·조합에 의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는 전체적인 형상”

으로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에 의해 나타난 전체적인 형상이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4) 특허법원(원심법원) 판단

원심 판단 요지

-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성이 없음**

판단 이유

① 창작적 표현 특정 부족

- 원고가 **기능적 요소를 제외한 창작적 표현을 특정하지 못함**

② 지형 및 기능적 제약

- 골프장 위치
- 지형
- 이용 편의성
- 안전성

등에 의해 설계가 제한됨

③ 구성요소의 일반성

- 티잉그라운드
- 페어웨이
- 러프
- bunker
- 워터해저드
- 그린

등은 **골프코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

④ 경기 규칙 제약

- 골프 경기 규칙
- 국제적 기준

등에 따라 설계 제약 존재

⑤ 자연적 요소

- 조경 등 자연요소는 **저작권법상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움**

⑥ 형상 유사성

- 개별 홀 형상은 **일반적인 유형 범위 내**

→ 결론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5)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 요지

㉠ 기능적 제약만으로 창작성 부정 불가

“골프코스 설계에 실용적·기능적 요소에 따른 표현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구성요소 선택·배치·조합의 창작성

“골프코스 설계자는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함으로써 다른 골프코스과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

㉢ 설계도면의 표현 내용

설계도면에는

- 시설물 배치
- 홀의 형태
- 구성요소 위치
- 모양
- 개수

등이 나타나며 “이러한 요소들이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는 전체적인 형상을 형성한다.”

㉣ 창작성 판단 방법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고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 원심의 법리오해

원심은

- 기능적 요소 존재만을 이유로
- 창작성 판단을 하지 않음

대법원 판단

“원심은 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이 창조적 개성을 갖추었는지 심리하여 창작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 따라서

“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6) 결론

- 원심판결 파기
- 사건 서울고등법원 환송

즉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

(7) 한줄 키워드 요약

“기능적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에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이 나타난 경우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8) 추가 정리 포인트

① 기능적 저작물 판례 키워드

“기능적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나타나 창조적 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창작성 판단 구조

1. 기능적 제약 존재 여부
 2. 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
 3.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 존재 여부**
 4. **창조적 개성 인정 여부**
-

③ 유사 사례 적용 가능 분야

이 판례 법리는 다음 영역에도 적용 가능

- 게임 맵 설계
- 건축 설계
- 조경 설계
- UI/UX 구조
- 기능적 디자인

즉 “기능적 설계물의 창작성 판단”